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99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복기왕・이연희・정성호

박용갑・한민수・최기상

박은정 · 임미애 · 정준호

채현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,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임.

이른바 비영리단체가 공급·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량조항임에 따라,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 및 지원의 강도가 달라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.

한편,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사업 명칭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립도 필요함.

이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·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하고,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"를 "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(임대주택의 공급 등) ①・	제11조(임대주택의 공급 등) ①・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	③		
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등			
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			
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	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		
지원할 수 있다.	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